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21

발의연월일: 2024. 1. 3.

발 의 자:김동아・이병진・허성무

한정애 · 서미화 · 서삼석

전현희 · 김영배 · 박정현

정을호 • 고민정 • 이정문

김문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 원하는 '업무지원인 서비스'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.

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'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',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'근로지원 서비스'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.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.

그런데,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.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, 전체 대상기업(2024년 추산 13.

033개)의 0.3%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.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.

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 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 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	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
제공) ① (생 략)	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
	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
	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
	다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
	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
	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
	<u>야 한다.</u>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